

#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  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  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  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  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### 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운영 박물관에서의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 골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시 운영 박물관 관람료 면제의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5조제1항4호의 신설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 <p>4. ~ 10. (생   략)</p> 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<u>사람</u></p> <p>5. ~ 11. (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